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10% 이상 보유 주주에게 의장선임청구권 부여>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02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강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7. 24.
3. 회 부 일 : 2025. 7.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 제366조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질서를 해치는 자에 대해 의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총회 운영과정에서 의장이 회사 측 이해에 따라 자의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거나 발언을 제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다수 또는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 참여를 제약하며, 주주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주요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경우, 회사 경영진과 대립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총회 참여와 발언 기회가 제한되거나, 회의 진행 자체가 공정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이에 주주의 권익 보호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총회 개최 전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함.

개정안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공정한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가능성이 높은 총회의 운영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회사와

주주 간 갈등으로부터 주주총회의 질서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이를 통해 주주총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건강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안 제366조의2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 주주총회의 의장은 해당 총회의 의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선임되며,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를 제한할 수 있음(제366조의2).¹⁾

○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칙적으로 정관²⁾으로 정하도록 하되,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³⁾ 매년 총회에서 의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같은 조 제1항).⁴⁾

○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의장을 선임할 수 있음(제366조제2항).⁵⁾⁶⁾

1) 「상법」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① 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대표이사가 맡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임.

3) 정관에서 정한 자가 모두 유고(有故)인 경우도 해석상 포함됨.

4) 독일 주식법 또는 일본 회사법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권한(일본 회사법 제315조)이나 전자주주총회의 참석 여부(독일 주식법 제118a조제2항) 등이 규율되고 있으나, 이 법과는 달리 별도의 선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5)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6) 다만, 법원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한 감사인의 보고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한 경우(제467조제3항)에는 제366조제2항과 같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제366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선임되는 것으로 봄.

□ 개정안은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의장은 총회 의사 진행을 통하여 안건 심사나 회의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므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안 제366조의2제2항 신설).⁷⁾

○ 다만, 현행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 행사 및 제366조제1항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소수주주의 요건이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지분 보유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소수주주 요건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⁸⁾

「상법」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7) 「상법」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① 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8) 이와 관련하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498호, 2026. 3. 16. 발의)」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요건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 주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第366條의2(總會의 秩序維持) ① (생략) <u><신설></u> ② · ③ (생략)	第366條의2(總會의 秩序維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u>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u>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문의처

02)6788-5055